

교수학습지원센터규정

(규정명 개정 : 2012.8.1., 2014.3.28.)

2009.03.01.제정	2011.04.18.일부개정	2012.01.30.일부개정	2012.08.01.일부개정
2014.03.28.일부개정	2015.12.30.일부개정	2019.10.29.일부개정	2021.01.01.일부개정
<u>2023.01.02.일부개정</u>			

<교수학습지원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·운영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 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4.3.28., 2019.10.29., 2021.01.01.)

[전면개정 2012.1.30.]

제2조(업무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4.3.28., 2015.12.30., 2019.10.29., 2021.01.01., **2023.01.02.**)

1. 선진 교수법 및 학습법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활동
2. 교수법 및 학습법 방법의 연구, 개발 및 보급
3. 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
4. 학습자의 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

5. (삭제)

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[전면개정 2012.1.30.]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14.3.28.)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14.3.28.)

[본조 제목 개정 2012.8.1.]

[전면개정 2012.1.30.]

제4조(조직 및 직원 등) ① 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.

(개정 2012.8.1, 2014.3.28.)

② 센터에는 필요한 직원, 초빙교원, 계약직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4.3.28., 2021.01.01.)

[전면개정 2012.1.30.]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학습운영위원회(이하

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4.3.28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4.3.28.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4.3.28., 2015.12.30., 2019.10.29.)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프로그램 개발·운영·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[전면개정 2012.1.30.]

제6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3.28.)

[전면개정 2012.1.30.]

제7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면개정 2012.1.30.]

부 칙

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부터 제5조 제3항까지, 제6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